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 11 선고 2022가단623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 고 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병주

2.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11. 30.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D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21. 10. 12. 접수 제231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B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21. 12. 20. 접수 제281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권

- 1) 원고는 2019. 6. 4. D와 사이에 대출과목 창업기업자금, 대출금액 1억 원, 대출기간 2019. 6. 7.부터 2024. 6. 6.까지, 이자율 연 2.35%, 지연배상금율 연 6%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D에게 1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 2) D는 2022. 2. 7. 이전부터 이자 등 납입을 지체하였고, 2022. 2. 27. 이후로는 원금 및 이자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D는 2022. 9. 1. 기준으로 원고에게 원금, 이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합계 82,751,114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D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 1) 피고 A은 D와 사이에 E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단79148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2. 10. 'D는 피고 A에게 70,588,200원 및 그 중 67,968,19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피고 A의 신청에 따라 2021.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D는 2021. 10. 8. 피고 A에게 2022. 6. 31.까지 7,5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 A은 D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3) D는 2021. 10. 12.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2315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D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D는 2021. 12. 17. 피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2.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2812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D는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의 2022. 7. 28. 기준 가액은 1,537,200,720원이고, D에게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한편,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무렵 D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피고 A 등에 대한 합계 1,678,038,578원의 채무 이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무렵에도 D가 부담하는 채무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순번	채권자 및 채권 내용	채권금액(원)
1	원고, 대출금채권	88,640,000
2	G은행, 대출금채권	350,000,000
3	H은행, 대출금채권	1,018,566,956
4	I, 공사대금채권 ¹⁾	20,000,000
5	주식회사 J, 물품대금 채권 ²⁾	42,120,472
6	여수세무서, 체납 세금 ³⁾	66,484,800
7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 보험료 ⁴⁾	27,226,350
8	피고 A, 공사대금채권	65,000,000
		합계 1,678,038,578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신용보증기금, G은행, H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1) 광주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1가소576214 판결.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20. 1. 22.자 2020차32 지급명령.3) 2021. 3. 31. 이전 발생분.4) 2021. 10. 이전 발생분.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는 1,537,200,72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원고 및 피고 A 등에 대한 합계 1,678,038,578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D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도 그와 같은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A은 D에 대하여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D의 제의에 의하여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D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 B은 D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진행하고 매출 확대를 위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D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그가 선의라는 사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앞서는 우선변제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서 피고들이 D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

별지